

[별표]

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(제10조제1항 관련)

1. 사용시간

구분	시간	비고
오전	09:00 ~ 12:00	
오후	13:00 ~ 17:00	
야간	18:00 ~ 22:00	

2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	기준	사용료		비고
		공연	행사	
공연장	오전	100,000	150,000	
	오후	140,000	190,000	
	야간	200,000	250,000	○ 야간 대관 시 철수 시간은 21:30까지 하여야 한다
전시실	1일	30,000		○ 1일 사용시간은 09:00 ~ 18:00로 한다.
연습실	1회	40,000		○ 공연장 대관 시 사용 가능

※ 비고

- 1회란 오전·오후·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·전시·행사를 말한다.
-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-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.
-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- 휴게시간(12:00~13:00, 17:00~18:00)은 콘솔운용을 비롯한 모든 작업이 불가하다. 단, 구와 협의하여 휴게 시간 변동이 가능하다.
-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·풍물·클래식 음악·대중음악, 연극·무용·오페라·뮤지컬 및 영화 등을 말한다. 다만,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.
- 영화·시애프(CF)·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.
-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.
 - 가. 30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%
 - 나. 30분 이상 ~ 1시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%
 - 다. 1시간 이상: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%

3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 부대설비		기준	사용료	비고
피아노	그랜드 대형 (외산)	1회	60,000	○ 피아노 조율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,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 ○ 피치(pitch)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 복구한다.
	그랜드 대형 (국산)	1회	40,000	
무대	덧마루	1일 기본 (66제곱미터)	50,000	○ 덧마루의 설치.전환.해체 작업 및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		추가 (3.3제곱미터)	10,000	
	음향반사판	1일	70,000	
	댄스 플로어 (무용 매트)	1일	100,000	
	샤막(흑/백)	1일	10,000	
음향	기본 사용료	1일	100,000	○ 음향 콘솔, 메인 스피커, 유선 마이크 3개, CD플레이어 1대 포함
	모니터스피커	1일 / 1개	10,000	○ 앰프 포함
	유선 마이크 (다이내믹)	1일 / 1개	5,000	○ 마이크 스탠드 포함
	유선 마이크 (콘덴서)	1일 / 1개	10,000	
	무선 마이크	1일 1채널	15,000	
	빔프로젝터 (15,000Ansi)	1회	200,000	

구 분		기 준	사 용 료	비 고
부대설비	기본 조명	1회	100,000	○ 콘솔 기구로 조종되는 조명 연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조명 사용료를 징수한다.
	무빙라이트 Spot	1일/대	50,000	
	무빙라이트 LED Wash	1일/대	50,000	
	무빙라이트 Beam	1일/대	10,000	
	PAR64 1킬로와트	1일/대	1,000	
	PAR46 250와트	1일/조	3,000	
	ERS 750와트 (SourceFour)	1일/대	1,000	
	포그 머신 ZR44/Hazer	1일/대	30,000	○ 포그액 포함
	드라이아이스 Aqua3300	1일/대	20,000	
	스트로브 Atomic3000	1일/대	10,000	
	팔로우 라이트 Follow Spot 2킬로와트	1일/대	30,000	
냉난방	공연장	1시간	시설별 시간당 연료비(전기료 포함) 시가에 10% 가산	○ 예열 시간을 포함한다. ○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 ○ 냉방 : 7~8월 의무사용 ○ 난방 : 11~3월 의무사용
	전시실	1시간		

※ 비고

- 1회란 오전·오후·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·전시·행사를 말한다.
- 공연 시 전력 소비가 전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발전차를 의무 사용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-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다.
- 조명 연출 및 조명 콘솔, 무빙라이트, 팔로우 라이트 등 부대설비의 운영은 사용자가 한다.
- 댄스 플로어 접착테이프, 드라이아이스 및 마이크 배터리 등 부대시설의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- 사용자는 과실로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선비용을 지불하고,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한다.
-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.